##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복기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138

발의연월일: 2024. 10. 31.

발 의 자:복기왕·정성호·윤종군

정준호 · 박홍배 · 염태영

문진석 • 한민수 • 이연희

이용우 · 김남근 의원

(11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령은 대지소유권 확보, 분양보증 등 일정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선분양을 허용하고 있고, 사업주체의 재정부담 완화 등 이점으로 선분양이 다수 활용되고 있음.

그런데 선분양의 경우 부실시공, 금융비용 소비자전가 등 수분양자 피해뿐만 아니라 분양권 전매로 인한 부동산 투기 문제까지 발생시키 고 있어 선분양보다는 후분양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후분양(주택건축 전체공정의 80% 이상 이후 입주자 모집)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후분양 활성화를 유도함과 아울러 수분양자 보호 및 부동산 투기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48조제3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주택 건축공정이 전체 공정의 100분의 8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건축공정의 판단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모집에 관한 적용례) 제48조제3항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48조(공공주택의 공급) ① · ② | 제48조(공공주택의 공급) ① · ②     |
| (생 략)                |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|
| <u> &lt;신 설&gt;</u>  |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분양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주택 건축공정이 전체 공정의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<u>100분의 80 이상의 범위에서</u> |
|                      |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여야 한다. 이 경우 건축공정의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판단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             |